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사실 미신고에 대한 제재 완화>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038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I. 개요

1.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03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6. 24.
- (3) 회 부 일 : 2025. 6.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변경사실 미신고를 설치 미신고와 동일하게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유사입법례인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행정명령을 받도록 하고 형벌에 처하지는 않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서로 다른 복지시설 간에 설치·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받도록 함(안 제62조제1항제1호 신설).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7조제6호).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에 의한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신 ‘시설 개선, 사업 정지,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 처분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1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u><신설></u> 1. ~ 7. (생략) ②·③ (생략)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 ----- ----- ----- ----- -----.
	1. 제5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한 때
	2. ~ 8. (현행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제87조(벌칙) ----- ----- -----

벌금에 처한다.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59조제2항에 따른 <u>신고 또는 변경신고</u> 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 <u>신고(변경 신고는 제외한다)</u> ----- ----- -----
7. ~ 16. (생략)	7. ~ 16.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② 신고한 사항 중 중요사항¹⁾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9조제2항),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87조제6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1) 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각호)

- 참고로, 최근 3년간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신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신고 의무 위반 처벌 현황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설치·운영 미신고	1건	3건	2건
중요사항 변경 미신고	-	-	-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유지하되, 중요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사업 정지, 폐쇄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복지시설 관련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제재 처분의 균형성·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다른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서는 관련 복지시설 설치·운영 미신고에 대해서만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의 경우는 변경 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노인복지법」에는 변경 신고 의무는 있지만 미이행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참고자료 1: 관련 법률 조문).

< 복지시설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 입법례 비교 >

구분	설치·운영 신고 미이행 제재	변경 신고 미이행 제재
「장애인복지법」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87조제6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87조제6호)
「사회복지사업법」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54조제3호)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제40조제1항제5호)	• 변경 신고 규정 없음.
「노인복지법」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57조제1호)	• 관련 규정 없음.
「아동복지법」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71조제3항제3호)	• 관련 규정 없음.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는 변경신고 의무 규정 있음. ²⁾

□ 다만, 개정안 부칙에서는 경과조치로 개정 전 위반행위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여, 개정 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개정 후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87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 「형법」 제1조제2항 및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에 따르면,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벌이 폐지되거나, 완화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리한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³⁾

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⑤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아동복지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定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아동복지시설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법제기준과 실제.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을 때
2. 사면이 있을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② 대법원에서도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법률의 개정 동기와 무관하게 「형법」과 「형사소송법」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⁴⁾한 바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형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형벌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한 경과조치가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법원(20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3. 관계부처 및 단체의견

가. 보건복지부

□ 유사입법례 대비 과도한 형벌규제를 개선하여 시설 설치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기획재정부 주관 경제 형벌규정 개선과제에 포함).

다만, 장애인복지시설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나. 관계 단체

단체	의견 주요내용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	• 변경신고 누락은 행정상 실수에 기인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u>1차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조치하는 것이 타당</u> 하나, 단계적 제재 등의 가이드라인 필요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u>현장 운영의 현실성,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을 고려한 법률 개정으로 타당</u>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찬성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설치 미신고에 대한 처벌은 현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변경 미신고의 경우는 설치 신고 후 행정청 등에서 행정명령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u>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받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찬성</u>

문 의 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관련 법률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때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노인복지법」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변경·폐지 등) ①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제61조의2(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1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